

조선전기 공노비의 選上 入役 규정 연구

소순규(蘇淳圭)*

목 차

1. 머리말
2. 국초 선상노비의 입역 규정 정비
3. 세조대 선상 변차의 확장과 대립의 허용
4. 성종대 이후 선상규정의 재정비와 대립의 관행화
5.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노비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지만, 중앙의 각사에 선상, 입역하는 선상 노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기존 연구를 통해 조선의 공노비제 운영양상, 납공노비 및 선상입역 노비의 부담, 입역 규정의 정비 과정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노비의 부담과 입역 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초 선상노비들의 입역 규정의 정비과정과 그 과정에 따른 노비들의 부담을 추적해보았고, 기존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종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된 선상 규정에 따르면, 선상은 지방에 거주하는 奴에게 부과하였고, 이들에게는 봉족 婢 2명이 지급되었다. 선상하는 자들은 모두 3번으로 나누어 윤차 입역하도록 하였고, 일반적으로 입역 기간은 6개월이었다. 그러나 이들 노비들의 소속된 각사의 노비보유 상황에 따라 이들 노비들의 변차는 천차만별이었고, 이에 따

* 한국학중앙연구원 태학사과정.

른 부담도 제각각이었다. 단종때 이르러 이들 선상노비들의 번차는 대폭 확대되어 지방은 11번, 경기는 13번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선상노비들은 5년 내지 6년에 6개월을 입역하도록 변화하였다. 이러한 수는 성종대 이르러 다시 7번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해당 내용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한 번의 입역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다.

한편으로 선상 입역에 대한 대립도 꾸준히 일어났다. 애초 대립을 금지하던 조정은 성종대 이후 대립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대한 대립가를 국가에서 공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국가의 공정가는 1개월 입역가로 면포 2필이었으나, 실제 민간에서 통용되는 입역가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에서 1개월 입역가는 2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 국가 공정가의 입역가가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노비, 공노비, 선상(選上), 입역(入役), 대립(代立), 대립가(代立價).

1. 머리말

조선 건국 이후 寺社奴婢의 혁거를 통해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수가 대폭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태종대 8만을 헤아리던各司奴婢의 수는 15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30만을 육박하기에 이르렀고, 국가에서는 이들 공노비들을 관리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이들에게 役 또는 身賁를 부과하고, 이들의 도망이나 피역을 막기 위한 추쇄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공노비는 크게 신공을 바치는 납공노비와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입역노비로 구분할 수 있고, 입역노비는 다시 지방관아에 소속된 관노비와 중앙각사에 소속된 선상노비로 구분할 수 있다. 납공노비는 조선초 신공액이 확정된 이후 비교적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되었고, 거주지나 소속 관서에 따라 그 부담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반면 입역노비는 소속 관서나 거주지에 따라 부담의 편차도 적지 않았다. 특히 거주지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입역해야 하는 선상노비는 그 부담이 매우 컸으며, 이에 따라 선상노에 대한 국가의 관리 체계 정비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타인을 대립시키는 현상도 자주 발생하였고, 조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심이 이어졌다.

조선의 국역 편성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그 일환으로 노비의 존재가 언급된 김석형의 연구 이래로,¹⁾ 조선의 공노비제의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²⁾ 이 중 지승중은 조선시대 공노비제도의 운영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아울러 납공노비 및 입역노비의 부담과 그와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³⁾ 또 전형택은 공노비의 선상 입역에 주목하여 이들의 입역 규정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아울러 선상대립 현상의 발생과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⁴⁾ 이들 연구에 따라 조선전기 공노비제의 운영의 윤곽이 비교적 명확히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공노비의 선상 제도에 관해서는 몇 가지 재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세조대를 전후한 선상 노비 선발의 권한 이행 문제, 세조대 이후 노비 선상제도가 공안과 결부되어 운영된 정황 등은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상의 변차 변화 등도 몇몇 중요한 변화의 계기들을 누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선상노비의 규모나 그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보다 선명히 규명되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부분을 기초로, 선상 입역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변화의 내용과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규모 역시 성종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것이 전체 공노비 규모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국초 선상노비의 입역 규정 정비

조선 건국 이후 각사에 소속된 노비의 입역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기 시작한

1) 김석형, 「이조초기 국역편성의 기저」, 『진단학보』 14, 진단학회, 1941.

2) 조선시대 노비제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으로는 전형택, 「奴婢制度 및 그 變遷에 관한 諸說의 整理: 朝鮮時代의 奴婢 研究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8, 국사편찬위원회, 1996이 참조된다.

3)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4) 전형택, 「朝鮮初期의 公奴婢 勞動力 動員體制」,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1990.

것은 태종대부터였다. 주지하다시피 태종은 전국의 사찰 소속 사사노비를 속 공하여 공노비로 편성하였고, 이들 규모는 대략 8만 여구에 달하였다.⁵⁾ 이들 혁거사사노비는 이후 각사로 분속되었고, 일부는 외방의 각관에 분속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사노비의 혁거와 이들의 공노비 편성은 앞서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시대 공노비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⁶⁾

이러한 공노비들 중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각사에 실제 입역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選上’이라 불렀다. 고려시대의 경우, 관리들이 자신의 본관에 소속된 관노비들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여 부리는 것을 선상이라 칭하였는데,⁷⁾ 조선시대에는 그 용례가 넓어져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나 기생이 서울로 와 입역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선상 노비의 입역 규정은 태종대부터 처음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세종대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노비의 입역과 관련된 규정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정종 즉위년 즉 위 교서에서 속공노비들은 매 2구마다 1구를 입역하도록 한 규정이었다. 이 규정은 입역노비 1명당 1명의 봉족을 지급하라는 의미로도, 또 2명의 노비가 서로 번갈아가며 입역하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가능한데 명확한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다.⁸⁾ 이후 태종 12년에 입역노비에 대한 봉족 지급 규정이 정비되었는데, 당시 규정으로 입역 노비 1명당 지급되는 봉족은 2명이었다. 다만 관서 별로 노비의 수가 일정치 않아, 해당 관서 내에서 봉족을 2명씩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1명을 지급하고 아울러 입역기간동안 朔料를 지급하도록 하였다.⁹⁾

태종대 봉족 지급 규정 정비를 거쳐, 노비의 입역 규정이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세종대였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들을 참조해 보자.

5) 『태종실록』 권30 15년 8월 20일 癸巳. “革去寺社奴婢八萬餘口，專屬典農寺，恐不能悉考其生產物故.”

6) 한국사에서 노비의 존재양태와 인구 구성상의 비중의 변천에 대해서는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奴婢制의 추이와 성격」, 『노비·농노·노예—隸屬民의比較史—』, 일조각, 1998; 「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 2007 참조.

7) 『태종실록』 권6 3년 11월 20일 甲午; 『태종실록』 권10 5년 9월 6일 戊戌.

8) 『태조실록』 권15 정종 즉위년 9월 12일 甲申. “屬公奴婢，每人立役，致使飢寒，不免逃匿。自今每二口役一口，俾無失所.”

9) 『태종실록』 권24 12년 11월 3일 甲申.

A-㉔. 각도의 선상노비는 각사의 사무가 번다하고 간단함을 분간하여 수효를 정하고, 이를 각각 세 번으로 나누어서 차례로 번상하여 그들의 힘을 좀 쉴 수 있게 하십시오.¹⁰⁾

A-㉕. 옛 관례에는 혹 1년 만에 교대하기도 하고, 혹 석 달 만에 교대하기도 하는데 (...) 지금부터는 여섯 달로 정할 것.¹¹⁾

A-㉖. 서울에 거주하는 노비의 奉足은 모두 婢로 삼게 하소서¹²⁾

A-㉗. 서울에 거주하는 노자는 모두 3번으로 나누어, 일이 많지 않을 때에는 번을 합하지 말게 하고 매양 2번씩으로 입역하도록 하고, 1번은 번갈아 휴식하도록 하십시오.¹³⁾

당시 각사에 입역하는 노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노비[京中奴婢]와 외방에 거주하며 선상하는 선상노비로 구분되었다. 위의 A 규정은 각사의 입역 규정인데, 앞의 A-㉔와 A-㉕는 외방의 선상노비, 뒤의 A-㉖와 A-㉗는 경중의 각사 노비를 위한 규정이었다.

먼저 A-㉔에서 보듯이, 선상노비는 모두 3번¹⁴⁾으로 나누어 입역하도록 하였다. 아마도 이전까지는 2번으로 서로 상호 교대하여 입역하도록 하였던 것을 세종 7년 번차를 늘려 3번으로 번차를 늘린 것이었다. 아울러 A-㉕에서 보듯이 한 번 입역할 때 기간은 6개월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외방의 선상

10) 『세종실록』 권28 7년 6월 17일 乙卯. “各道選上奴婢, 分各司事務預簡, 定數分爲三番, 更迭番上, 以寬其力.”

11) 『세종실록』 권30 7년 11월 17일 壬子. “舊例或一歲而遞, 或三朔而遞 (...) 自今以六朔爲定.”

12) 『세종실록』 권39 10년 1월 4일 丁亥. “今後京居奴婢奉足, 皆以婢子給之.”

13) 『세종실록』 권74 18년 9월 23일 乙卯. “其居京奴子, 並分三番, 非遇多事, 則勿令合番, 每使二番立役, 一番輪流休息.”

14) 番이란 사람이 실제 입역하여 해당 역을 수행하는 것을 지칭하고, 동시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몇 교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특정한 역의 수행자가 해당 역을 수행하는 경우 入番[또는 立番], 上番 등으로 표현하고, 임무를 마치고 교대하고 나온 경우는 下番 등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역이 3교대일 경우는 三番, 5교대일 경우는 五番 등으로 표현한다. 교대자 없이 한 명이 상시적으로 해당 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長番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 한 번 입역 때마다(즉 번을 설 때마다) 입역기간을 병기하면 해당 역에 대한 입역 조건을 규정하는 용어가 된다. 예컨대 6개월을 입역하며 5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五番, 六朔相遞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 번 입역 마다 기간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번차가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교대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입역자에게 가벼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에서는 번차의 증가는 해당 역을 수행할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비는 6개월을 입역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1년의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과거 2번으로 입역하며 입역 기간 역시 3개월에서 1년으로 불규칙했던 것에 비하여 선상노비들의 입역 여건이 개선된 것이었다.

한편 경중에 거주하는 노비들의 경우, 선상노비들에 비하여 입역 규정이 보다 가혹해졌다. 우선 A-㉔에서와 같이 경중노비들에게 지급하는 봉족은 모두 외방에 거주하는 婢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외방에 거주하는 富實한 奴들이 경중 노비의 봉족을 자처하며 선상 입역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위의 기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각사노비에 대한 지급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선상 노비들에게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어 선상입역은 奴로, 봉족은 婢로 차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¹⁵⁾

아울러 A-㉔에서 보듯이 경중 노비들의 입역 규정은 과거 2번 相遞 규정에서 3번 중 2번이 입역, 1번이 휴식으로 번차가 강화되었다. 경중노비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입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3번 중 2번 입역 후 1번 휴식이면 2개월간 입역 이후 1개월 휴식이 부여되는 것이었다.¹⁶⁾ 이렇게 경중 노비들의 입역 규정이 강화된 것은 외방에서 선상하는 노비의 수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인다. 선상노비들의 입역이 고역이어서 대립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이들의 수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경중 노비들의 입역일 수를 늘린 것이다.¹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종대 선상노비 및 각사에 입역하는 노비에 대한 제반 규정이 정비되었다. 선상노비는 봉족 2명을 지급받고 6개월 입역 이후 1년을 휴식하는 3번 입역으로 규정되었고, 경중노비는 외방에 거주하는 비 2명을 지급받고 2개월 입역 이후 1개월 휴식하는 3번 중 2번 입역으로 정리되었다. 이

15) 『성종실록』 권16 3년 3월 23일 己未. 이 기사에서는 선상입역하는 대상을 '正役奴子'로 지칭하여 선상의 역은 奴만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입역할 노는 부족한데 비하여 婢는 여유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형제 등의 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선상하는 노에 대한 봉족 지급은 婢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16) 『성종실록』 권26 4년 1월 12일 癸卯.

17) 『세종실록』 권74 18년 9월 23일 乙卯.

규정은 세종 재위기간 및 문종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 입역 기간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각사에 선상 입역하는 것은 상당한 고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방에서 선상하는 노비들의 괴로움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노비 사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우선 첫째로는 입역하는 관서별로 노비의 수가 일정하지 않아 입역 기간이나 번차가 천차만별이란 점이였다.

B. 각사의 노비가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서 노비가 많은 곳에는 봉족도 수에 의하여 정하여 주고, 遞番하는 기간이 혹은 5, 6년 간격이 되는데다가 10여 년이 된 뒤에 番上하는 자도 있습니다. 노비가 적은 곳에는 正役 한 명에 婢 한 명만을 주고 변상하는 자가 매년 여섯 달 만에 서로 교체하여 휴식할 수가 없어서 그 노고가 견줄 데 없습니다.¹⁸⁾

위의 B 기사는 세종 21년의 기사인데, 각 관서가 보유한 선상노비의 수에 따라 봉족 지급 및 번차가 실제 규정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관서는 『경제육전』에 규정된 봉족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번차의 운영도 매년 육 개월마다 번갈아 입역하고 있었다. 세종대 초반 봉족 및 번차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관서별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 노비를 다수 보유한 곳에서는 이러한 규정보다도 훨씬 가벼운 입역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불균형에 따라 입역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었던 점이다. 각 노비의 형지안을 근거로 노비를 선상 시켜야 할 수령이나 도회관차사원들이 해당 사무를 직접 맡지 않고 아전에게 전가하고, 아전의 자신의 농간에 따라 노비를 올려보내는 일도 다수 발생하였다.¹⁹⁾ 또 노비의 형지안과 증기 등의 관리가 소홀하여, 함부러 이 문서를 유실시키거나 훔쳐

18) 『세종실록』 권86 21년 9월 18일 癸亥. “各司外方奴婢, 正役一名, 給奉足二名之法, 載在六典. 然各司奴婢, 多寡不同, 奴婢多處則其奉足依數定給, 遞番之期, 或隔五六年, 乃至十餘年, 而後番上者有之. 奴婢少處則正役一名, 只給一婢, 其番上者, 每年六朔相遞, 無有休息, 其苦無比.”

19) 『세종실록』 권30 7년 11월 17일 壬子.

가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²⁰⁾

마지막으로 선상 입역의 고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립이 성행하였던 점이다.

C. 선상노는 관리들이 더욱 마음을 써서 돌보아 주지 않는 까닭으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샳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역 시키는데 6개월의 값이 綿布 15필에 해당됩니다. 어리석은 奴子들은 훗날 파산될 걱정을 생각하지 않고서 한갓 눈앞에 조금 휴식하는 방책으로써 소·말·토지·산업 등을 典賣하여, 마침내는 실업하여 도산하는데 이릅니다.²¹⁾

위의 C 기사에서 보듯이 당시 선상노들의 6개월 입역 대가는 면포로 15필, 1개월당 대립가는 약 면포 2.5필에 이르고 있었다. 또, 세종대 후반 호조판서 안순의 보고에 의하면 선상노비를 비롯한 도부외, 조예, 선군 등의 대립가가 1개월당 면포 3필에 이르고 있었다.²²⁾ 이러한 액수는 선상노비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립가 부담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선상노비가 아닌 납공노비의 신공액을 살펴보면, 세종 7년에 노는 연간 정포 1필과 동전 100문, 비는 연간 정포 1필과 동전 50문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²³⁾ 반면 선상노들에게는 해마다의 신공이 면제되고 있었고, 아울러 두 명의 봉족까지 지급되어 있었다. 3년이 돌아가며 입역을 하므로 선상노비들은 3년 중 1년은 입역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면제된 신공액은 정포 3필과 동전 300문이며, 3년간 봉족비로부터 받는 액수는 정포 6필과 동전 300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선상노비 1명이 1년간 입역하는 대가로 면제 혹은 봉족에게 지급받는 경제적 가치는 총 정포 9필과 동전 600문이었다는 것이다.

20) 『세종실록』 권86 21년 9월 18일 癸亥.

21) 『세종실록』 권74 18년 9월 23일 乙卯. “選上之奴則官吏尤不用心存恤，故亦不堪其苦，雇人代役，六朔之價，絛布十五匹。無知奴子，不顧後日破產之患，徒以目前息肩之計，至典賣牛·馬·田產，終至失業逃散。”

22) 『세종실록』 권87 21년 11월 11일 乙卯. 다만 이 기사에서 안순이 말하는 대립가는 선상노비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도부외, 조예, 선상노비, 선군 등에 입역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것이어서 정확히 선상대립가로 보기는 어렵고 3필 전후에서 대립가가 형성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23) 『세종실록』 권28 7년 6월 14일 壬子.

세종대 당시 동전 1문의 가치는 미 1승에 해당하였으므로²⁴⁾, 600문은 600승이고 斗로 환산하면 60두, 石으로 환산하면 4석에 해당하였다. 또 당시 정포 1필은 대략 미 4두의 가치에 상응하므로,²⁵⁾ 60두는 정포로 환산할 경우 대략 15필에 해당한다. 이를 정포 9필과 합산하면 총 24필이다. 정포 2필이 면포 1필에 상응하므로²⁶⁾ 이를 면포로 환산하면 대략 12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에서 인정하는 선상노비 1명의 1년 입역의 경제적 가치는 면포 12필 정도였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당 약 면포 1필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의 C 기사에서 언급하듯이 대립가는 대략 1개월에 2.5필에 준하였다. 만일 선상노비가 직접 입역 대신 대립을 세운다면, 1년 대립가는 모두 30필이 필요하였다. 3년마다 약 면포 18필, 연간으로 환산하면 면포 6필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연간 추가 부담 면포 6필을 쌀로 환산할 경우 3석 3두에 해당하는 양이며, 납공노비의 1년 신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이러한 높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선상 대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 선상 입역의 고충이 컸기 때문이며, 또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선상 입역의 고충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수를 줄이고, 관서별 입역 노비의 수를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노비의 번차나 입역 기간 등 세종대 초반 정비된 노비 입역 규정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선상 입역 규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한 시점은 세종 사후 단종대부터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4) 『세종실록』 권28 7년 6월 16일 甲寅.

25) 정포 1필의 가격은 시기별, 풍흉에 따라 다소의 증감이 있으나 대략 미 4두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2년 저화발행 당시 저화 1장은 미 2두, 상포 1필에 준하여 발행하였고, 상포와 정포는 가치 비율이 1:2였음을 고려하면 정포 1필 가격은 4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순규, 「조선 태종대 저화 발행 배경에 대한 재검토—‘화폐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역사와 담론』 92, 호서사학회, 2019 참조.

26) 『세종실록』 권47 12년 2월 4일 乙亥.

3. 세조대 선상 번차의 확장과 대립의 허용

세종대 정비를 마친 노비의 선상 입역 규정은 단종 2년 대폭 변화되었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는 영의정의 자리에서 국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세조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종 2년 당시의 변화는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도 줄곧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선상 입역과 관련된 변화는 아래 기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D-㉔. 諸司의 京居奴婢 및 選上奴子의 多寡가 같지 아니하고, 役의 苦歌이 고르지 않습니다. 충청·전라·경상·황해·강원도 등에 사는 奴子의 元額을 壯弱으로 나누어 京中諸司에 均一하게 정하여 선상시키되, 5년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하고[五年相遞], 元定數와 加減한 수를 諸道에 移文하여 觀察使로 하여금 정하게 하고, 都會官에서 磨勘하여 抄定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십시오. 경기도는 徭役이 他道에 비하여 배나 더하니 6년에 한 번씩 교대하게 하고[六年相遞], 평안도는 防禦가 가장 중하고, 또 本朝의 使臣과 중국의 사신에 대한 支待의 폐가 작지 않으니, 選上하지 말게 하십시오.²⁷⁾

D-㉕. 이제 諸司의 外方奴子는 3丁을 1戶로 삼고, 1戶는 5년에 한 번 番上합니다[一戶五年一番上].²⁸⁾

위의 D 기사에서는 노비 선상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선상 번차의 변화이다. 세종대 선상노비는 3번으로 편성하고, 6개월씩 번갈아가며 선상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보면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五年相遞] 번차를 증가시켰다. 한 번의 선상기일이 6개월이라고 할 때, 5년에 한번 교대하도록 한다면 번차는 모두 10번 내지는 11번이 된다. 경기의 경우는 6년에 한 번 교대하도록 하였

27) 『단종실록』 권12 2년 12월 3일 己卯. “諸司京居奴婢及選上奴子, 多寡不同, 苦歌不均. 以忠淸·全羅·慶尙·黃海·江原等道所居奴元額, 分壯弱, 於京中諸司, 均一定上, 使五年相遞, 其元定數及加減數, 移文諸道, 令觀察使定, 都會官磨勘, 抄定上送. 京畿則徭役倍於他道, 令六年相遞, 平安道則防禦最緊, 又本朝使臣及上國使臣支待之弊不小, 勿令選上.”

28) 『세조실록』 권3 2년 3월 28일 丁酉. “今諸司外方奴子, 三丁爲一戶, 一戶五年一番上.”

는데, 이때 필요한 번차는 모두 12번 내지는 13번이다.²⁹⁾

기존 연구에서는 이 五年相遞를 5번으로 번차를 조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전형택은 조선초 공노비의 입번을 세종대 3번, 세조대 5번, 성종대 7번으로 점차 번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세조대 5번의 유일한 근거 기사가 바로 위의 D-㉔ 기사였다.³⁰⁾ 그러나 위의 사료상의 맥락으로 볼 때, 5년마다 교대가 5번을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는 아래의 D-㉕ 기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D-㉕는 세조 3년 양성지의 발언 내용이다. 사료상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외방의 노자는 5년에 한 번 입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의 사료들을 통해 봤을 때 5년이 아닌 5년에 한 번 입역으로 입역 번차가 대폭 확대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위의 D 사료들에서와 같이 외방노자가 5년에 한 번 입역, 또는 5년에 相遞되기 위해서는 번차는 10번 내지는 11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초 여러 병종의 입역 규정을 확인해 보면, 兩番으로 서로 교대하는 병종 외의 번차는 모두 3, 5, 7과 같이 홀수로 규정되어 있었다.³¹⁾ 선상입역 규정 역시 세종대에는 3번이었고, 후술하겠으나 성종대에는 다시 7번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五年相遞는 11번, 六年相遞는 13번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단종 2년경 선상입역노의 번차는 3번에서 11번(경기는 13번)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두 번째 증대한 변화는 첫 번째의 번차 조정과 큰 관련이 있는데,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9) 6개월씩 10번으로 편성될 경우, 선상노비는 6개월 입역 이후 4년 6개월 휴식이후 다시 6개월을 입역하게 되며, 6개월씩 11번으로 편성될 경우, 6개월 입역 이후 5년 휴식 이후 다시 6개월 입역하게 된다. D-㉔에서 '5년마다 서로 교체한다'는 표현은 위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경기 지역의 '六年相遞' 역시 마찬가지로 12번 또는 13번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0) 전형택, 앞의 글, 1990, 19면.

31) 현존하는 『경국대전』의 번차도목을 살펴보면 장번, 양병의 병종을 제외하면 모두 3, 5, 7, 11번 등 홀수로 편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正兵의 경우 번차가 8번으로 되어 있어 예외적인데, 이 정병도 『경국대전』 수립 직전까지는 번차가 7번이었음을 실록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종실록』 권13 2년 11월 22일 경신. 조선초의 이러한 관례를 확인해 볼 때, 본문에서도 11번, 13번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 番上하는 數는 正役奴子가 4,200여 구이고, 奉足奴婢를 通計하면 12,600여 구입니다.³²⁾

위의 E 기사는 성종 3년 당시의 기사인데, 한 번 입역하는 노비의 수가 4,200여 구라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성종 15년에 간행된 『경국대전』 을사대전에 규정된 각 관서의 차비노와 근수노의 총합은 대략 3,800여 구에 달하고 있다.³³⁾ 시대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한 번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수는 대략 4,000여 명 내외, 이들에 대한 봉족까지 합하면 총 12,000여 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세종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선상 노비의 수는 대략 12,000명, 봉족까지 더하면 약 36,000명의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번차를 11번차 내지는 13번차로 바꾸게 되면 선상 노비의 수는 대략 44,000명이며 봉족까지 더 한 수는 132,000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세종대에 비하여 전체 선상 입역노와 봉족의 수가 대략 3.5배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³⁴⁾

그렇다면 세조 집권을 전후한 시기 선상 번차의 증가와 입역노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배경으로는 태종대 이후 꾸준히 증가한 각사 소속 노비 숫자를 들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태종대 이후 조선전기 노비 추쇄 과정에서 확보된 노비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선전기 공노비 수의 증가

시기	각사노비	제읍제역노비	전거
태종 17년	119,602 노 : 59,585 비 : 60,017		『태종실록』 권33 17년 6월 3일 정해

32) 『성종실록』 권16 3년 3월 23일 己未. “番上之數, 正役奴子四千二百餘口, 奉足奴婢通計一萬二千六百餘口.”

33) 지승중, 앞의 책, 245면 <표2-1> 참조.

34) 선상입역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번차의 조정에 따른 선상노비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1번에 입역하는 수를 기준으로 선상노비의 규모를 대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승중, 앞의 책, 243-247면. 그러나 사료에 등장하는 수는 한 번에 입역하는 수를 지칭하고, 이에 번차를 대입하여야 국가에서 규정하는 선상노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 21년	21만 수천		『세종실록』 권85 21년 5월 12일 기미
세조 7년	이십 수만		『세조실록』 권24 7년 4월 2일 임신
성종 15년	261,984	90,581	『성종실록』 권169 15년 8월 3일 정사

위의 <표 1>을 참조해 보면, 태종대 사사노비를 혁거한 이후 중앙 각사에 소속된 노비는 태종 후반경 이미 12만에 육박한 수였다. 이후 이 수는 세종 21년경 두 배 가량으로 증가하여 21만을 상회하게 되었다. 세조 7년경에는 그 수가 二十數萬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후 성종대의 수치를 참조해 보면 대략 22만-24만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각사노비의 수에는 지방 각관에 소속된 관노비의 수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종 15년 추쇄결과에서는 제읍제역 노비 9만 명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태종대-세조대 추쇄 결과 보고에서도 역시 제읍, 제역에 소속된 노비의 수는 별도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국대전』의 규정된 제읍, 제역에 소속된 노비의 정액은 약 7-8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참조하면 태종-세조대 역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제읍, 제역 노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조가 즉위할 당시의 각사 소속 공노비는 대략 20여 만, 각관에 소속된 제읍 노비의 수는 7-8만 정도로 공노비의 총 규모는 대략 30만을 전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선상 입역하는 노비 및 이에 대한 봉족의 수는 세종대 말엽 3번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6,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다. 20여 만 명의 각사노비 중 4만 명 미만의 노비만이 실제 입역 및 이에 대한 봉족으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세조대 번차 조정은 이러한 각사 소속 노비의 증가에 짝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선상 입역노와 납공 노비의 부담 불균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므로,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수를 대폭 늘려 번차 조정을 통해 그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증가한 선상 입역 노비의 수 중에서도 2/3는 봉족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실제 선상하는 노비의 수는 대략 4-5만 명의 수준이었다. 전체 각사 소속 노비 중 20%에 해당하는 노비를 선상 노비로 편성하여 전체적인 공노비 부담을 균일하게 하려는 것이 세조의

의도였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세조대에는 선상 입역하는 노비 뿐 아니라 서울로 거경시위하는 여러 병종의 번차 역시 대대적으로 변화하였다. 갑사의 경우 종전의 7번에서 11번으로 번차를 대폭 확대하였고,³⁵⁾ 정병 역시 7번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³⁶⁾ 이와 같은 갑사 및 정병의 번차 조정은 보법을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된 것으로,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번차 조정과 같이 거경시위에 대한 부담을 균일하게 편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세조대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국역을 부담하는 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번차의 수를 확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³⁷⁾

위와 같은 선상 노비의 수 증가 및 번차의 조정 외에도 D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큰 변화로는 선상 노비의 수를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중앙의 각사에서 지방의 관찰사로 변화한 것이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해 보자.

F. 지금부터 京中各司에서는 각기 外方奴婢案의 바깥 면에 어느 관사의 노비안이라고 큰 글씨로 쓰고, 노비의 이름 밑에는 어느 노비 어느 해 선상한 정역노, 봉족 여부를 분간하여 표시를 붙여두고, 비록 한 명이라도 일찍이 선상하지 않았거나, 전에 입역한 자를 다시 정역으로 한 경우 (...) 해당 각사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형조로 전보하도록 하십시오.³⁸⁾

위의 F 기사는 세종 26년 각사의 선상 입역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奸吏들의 농간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이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세종대까지 선상 노비들은 서울의 특정한 관서에 소속되어 있었고, 소속된 노비들 중에서 매번 선상할 노비들을 선발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고 있었다. 관서별로 소속된 노비의 수가 달라 입역 번차도 관서별로 차이가 있었음은 앞서

35) 『세조실록』 권8 3년 7월 18일 己卯.

36) 『세조실록』 권39 12년 7월 8일 丁丑.

37) 조선초기 군종별 번차의 조정 과정 및 세조대 군역의 확장 및 번차의 증대에 대해서는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참조.

38) 『세조실록』 권105 26년 윤7월 10일 丁亥. “自今京中各司, 各於外方奴婢案外面, 大書某司奴婢案, 奴婢名下, 又書某奴某年某等選上正奉足, 分揀付標, 雖一名不曾選上, 而再定前役者及前等正役者 (...) 則當該各司詳加覈實, 轉報刑曹.”

B 기사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 선상 노비들을 입역 시키는 실무는 지방의 수령 및 도회관차사원 등에게 위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선 奸吏들의 농간으로 역의 불균형이 심각해 졌던 것이다. 그러자 각 관서별로 외방노비안에 선상노비 및 봉족의 이름과 선상 이력을 기록해 두고, 선상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된 여지를 관서별로 조사, 보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요컨대 선상 노비 및 봉족은 특정한 소속 관서가 있고, 이들의 입역에 대한 관리 역시 소속된 각사가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D 기사에서는 이러한 노비들의 선상 관리 주체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奴子の 元額을 壯弱으로 나누어 京中諸司에 均一하게 정하여 선상시킨다[所居奴元額 分壯弱 於京中諸司 均一定上]’ 는 것은 서울 각사의 필요한 노비 수를 현재 선상노의 수에 근거하여 확정하면, 이를 지방에 분정하였던 것이다. 이 수에 근거하여 선상노를 선정하고, 이를 관찰사가 확정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한 것이다. 즉, 이제 각사는 선상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수만큼의 선상노를 지방에 분정하여 입역시키게끔 변화한 것이다.

G-㉗. 京畿와 江原道の 嶺西 지방 여러 고을이 失農한 것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가을·겨울철 選上奴는 놓아 보내고, 그 내년 봄·여름철의 選上奴는 다른 道로 옮겨 정하십시오.³⁹⁾

G-㉘. 淸風郡奴 延金입니다. 選上奴로서 軍器監에 役事하는데, 지금 또 造紙署에 옮겨서 役事시키니, 배고프고 추운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 때문에 통곡합니다.⁴⁰⁾

G-㉙. 淸州牧使와 判官 등이 貧窮한 사람을 選上으로 정하였고, 刑曹에서 즉시 推覈 마감하여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역사시켰으니, 아울러 鞫問하여 아뢰어라.⁴¹⁾

39) 『세조실록』 권34 10년 12월 4일 癸未. “京畿及江原道嶺西諸邑失農尤甚, 請放遺秋冬等選上奴, 其明年春夏等選上奴, 移定他道.”

40) 『세조실록』 권44 13년 11월 19일 辛巳. “淸風郡奴延金也. 以選上奴, 役于軍器監, 今又移役造紙署, 不勝飢寒, 是以哭之.”

41) 『세조실록』 권44 13년 12월 24일 丙辰. “淸州牧使判官等, 以貧窮人, 定爲選上, 刑曹不卽推勘遺選, 而反役之, 莧鞫以啓.”

위의 G 기사들은 모두 세조대의 기사들인데, 이들 기사에서도 선상노에 대한 관리 주체가 각사가 아닌 지방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기사에서는 경기와 강원도의 실농을 이유로 해당 지역의 선상노는 놓아 보내고 대신 다른 도로 선상노를 분정 하게끔 지시하고 있다. 만일, 세종대와 같이 선상노들이 각각 개별 관서에 소속되어 있는 형태라면, 위와 같은 타도이정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선상노비들이 개별 관서에 소속 되는 것이 아니라, 각관에서 정해진 수 만큼을 서울로 선상시키는 방식일 때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해 진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청풍군에 사는 연금이란 노가 균기감에 선상 입역을 한 이후 또 다시 조지서로 옮겨서 선상을 하고 있다. 만일 세종대와 같이 선상노가 개별 관서에 소속된 형태라 한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기사에서도 빈궁한 선상노를 抄定했다는 이유로 청주목사와 판관을 벌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선상노를 초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서울의 각 관서가 아니라 지방의 수령이 지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문종대까지 각 관서별로 소속이 정해지고, 선상 입역 역시 각사별로 이루어지던 체제는 단종 2년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경증각사에 입역하는 노비의 수를 각 지방에 분정하고, 각 지방에서는 분정된 수 만큼의 선상노를 서울로 보내어 입역하도록 하였다. 선상 노비의 抄定, 관리 주체는 지방 각관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선상 입역의 중요한 변화는 납공 노비에 대한 관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세조대 이전까지, 각 관서에 직접 입역하는 선상 노비 또는 그 봉족을 제외하고 신공을 바치는 납공 노비는 서울의 관서에서 직접 관리 하였다. 즉 노비안을 근거로 해마다 대상 노비의 납공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세조대 공안 개정 과정에서 각 군현별로 노비 납공액을 총액화하여 공안에 기재하였던 것이다. 본래 공안은 각관에서 바치는 공물을 기록한 장부였으나, 점차 수록 내용이 확대되어 전세, 진상, 노비신공 등을 포함하는 예산 전체를 포괄하는 장부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는데, 이러한 공안 개정의 획기적 변화는 세조대 이루어졌다.⁴²⁾ 세조대 공안 개정 이후, 성종대

와 연산군대 두 차례 공안의 개정이 있었지만⁴³⁾ 군현별로 노비신공의 총액을 공안에 기재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았다. 즉, 납공 노비의 관리 주체 역시 서울이 아닌 각 군현으로 변화하고, 서울에서는 부과한 총액이 무사히 수납되었는지 여부만 살피도록 신공 수취 과정이 간소화 된 것이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세조대에 이르러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신공 또는 직접 입역을 해야 하는 공노비들의 관리 의무를 중앙의 각사에서 각 지방의 군현으로 이관하였다. 신공은 해마다 바쳐야 하는 신공액의 총액을 공안에 기재하여 부과하고, 선상 입역 역시 필요한 수를 군현에 분정하여 해마다 입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비의 수를 파악, 관리하고 입역 및 신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의 전반 과정은 모두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다만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수는 세조대 바로 공안에 기재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해 보자.

H-㉞. 본 고을 貢案의 선상하는 수는 8명뿐입니다⁴⁴⁾

H-㉟. 각사의 選上은 經國大典에 정한 수 3,300여 명도 이미 너무 많은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加定하니, 비단 외에도 있는 공천들이 그 폐단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司贍寺 納貢의 수가 차츰 줄어들어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大典에 정한 수 이외에 긴요하지 않은 것을 加定 선상하는 것은 재량하여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⁴⁵⁾

위의 H-㉞ 기사를 보면, 각 고을에서 선상하는 노비의 수도 공안에 기재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H-㉟ 기사는 종종 6년의 기사로, 세조대 이후 종종 6년까지는 성종대 초반, 연산군 7년 등 두 차례의 공안 개정이 더 있었다. 그런데 H-㉟ 기사를 참조해 보면, 가정된 선상 노비의 수를 줄이는

42) 세조대 공안 개정 및 강화된 공안의 위상, 공안 기재를 통한 노비신공 수취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순규, 「세조대 공안 수록 내용의 확대와 재정적 위상 강화」, 『역사와 현실』 110, 한국역사연구회, 2018a 참조.

43) 조선전기 이루어진 5차례 공안 개정의 시기와 각 공안의 특징에 대해서는 소순규, 「조선초기 공납제 운영과 공안개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참조.

44) 『증중실록』 권13 6년 4월 8일 丁亥. “本縣貢案選上之數, 只八名.”

45) 『연산군일기』 권40 7년 7월 17일 甲子. “各司選上, 大典付數三千三百餘人, 已爲過多, 而其後繼續加定, 以此, 非但外居公賤受弊, 司贍納貢之數漸減, 其弊不賞, 大典外不緊加定選上, 量減何如.”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기사는 연산군 7년 당시 공안의 개정 방향을 담은 공안상정청의 조례 중 일부이다. 이 기사에서는 선상 노비의 기준을 『경국대전』으로 잡고 있는데,⁴⁶⁾ 만일 세조대부터 공안에 선상 노비의 수가 기재되었다면 연산군 7년 당시 기준으로 삼는 수는 전대의 공안, 즉 성종대 공안이 거론되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참조해 보면, 선상 입역에 대한 관리가 지방 각 군현으로 이관되었지만 이를 공안에 기재하여 운영한 것은 연산군대 공안 개정 이후의 일로 보인다. 납공 노비의 신공역은 세조대 공안 개정 당시 군현별로 총액이 기재되어 운영되었지만,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수는 연산군 7년 ‘신유공안’이 만들어질 당시 정액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6세기 이후에는 국가의 공노비, 즉 납공노비와 선상노비 모두 공안에 기재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상과 같이 단종 2년 이후 선상 입역 규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종대까지 선상노의 입역 기간은 1년에 6개월, 번차는 3번이었으나 관서별 소속 노비의 수에 따라 일정하지 않게 운영되었다. 단종 2년부터 노비의 입

46) 한편 논문의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지만, 위의 H-㉔ 기사에서 『경국대전』 상에 기재된 선상노의 수가 대략 3,300여 명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경국대전』 을사대전 상에 각사의 차비노와 근수노의 총 수는 약 3,800여 명이고, 앞서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H-㉔ 기사의 시점은 연산군대이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경국대전』은 다른 판본일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수적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각사에 입역하는 노비는 지방에서 입역하는 노비, 즉 선상노비와 경중에 거주하면서 입역하는 경중노비가 있다. 이들은 입역의 번차가 각각 달랐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3,300은 각사의 차비노와 근수노 중에서 경중에 거주하는 입역노를 제외하고 각 지방에서 선상하는 노비의 수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중에 거주하는 입역노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나, 『성종실록』 권28 4년 3월 7일 정유 기사에 큰 참고가 된다.

당시 조정에서는 3번으로 나누고 그중 2번이 입역하는 경중입역노비의 번차를 2번 상호교대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227명을 새로이 경중노비로 차정하여 2번으로 변경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경중에서 입역하는 노비들 중 1번의 노비수는 227명이었고, 3번 중 2번이 입역하는 체제에서 동시에 입역하는 노비의 수는 약 454명이었던 것이다. 이에 227명을 더하여 총 908명의 노비를 454명의 2번으로 나누어 상호 교대하는 입역 체제로 변화시킨 것이다. 즉 당시 서울에 거주하는 각사입역노비의 수는 대략 681명(이후에는 227명을 가정한 908명), 그중 입역하는 노의 수는 454명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경국대전』 규정의 3,800명에서 제외하면 대략 3,300여 명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7) 『선조실록』 권178 37년 9월 19일 丙寅. “全羅道則光州等官, 奴婢貢案.”

역 번차는 전라, 경상, 충청, 황해, 강원도의 노비는 11번으로, 경기의 노비는 13번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선상하는 입역노와 봉족비의 수는 13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상 입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중앙의 각사가 아닌 지방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세조대 이후 줄곧 유지되었다. 연산군대 이후부터는 각 고을에서 선상하는 입역노의 수가 공안에 기재되어 고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처럼 단종 2년 이후 선상 입역과 관련한 제도는 대폭 변화되었다. 그런데 세조대에는 위의 입역 규정의 변화 외에도 중대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존재하였는데, 바로 선상노의 대립을 법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었다.

1.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전에는 外方の 選上奴子들이 그 父母의 老病이나 妻子들의 生業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서 대신 立役 하고, 京中의 역이 無役者와 육번의 역이 있는 자(有役六番者)가 그 값을 받고 대신 役을 행하여, 役이 있고 없는 자가 서로 도와 각기 生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號牌를 빌려 주는 것을 禁하는 것에 구애되어, 外方奴子들이 사람을 사서 대신할 수 없으므로, 도망하여 差役을 피하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諸司奴子와 諸員들이 모두 대신 立役하는 것을 양쪽의 情願을 들어 대신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 대로 따랐다.⁴⁸⁾

위의 기사에 따르면, 선상노들의 대립은 관행적으로 널리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한 역을 지고 있지 않은 자, 사복시 등에 입역하는 諸員⁴⁹⁾ 등이 대립가를 받고 대역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조대 호패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러한 길이 막히게 되었던 것이다. 본래 세조대부터 선상 대립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었으므로, 호패 시행으로 인하여 입역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의한 대립이

48) 『세조실록』 권14 4년 11월 4일 戊子. “刑曹啓, ‘前此, 外方選上奴子等或因父母老病, 或因妻子生業, 雇人代立, 京中無役者及有役六番者, 受價代役, 有無相資, 各遂生業. 今拘於號牌借與之禁, 外方奴子不得雇人代己, 逃避差役者多, 請自今諸司奴子及諸員一應代立者, 聽兩相情願代之’ 從之”

49) 기사에 등장하는 有役六番者는 사복시 등에 입역하는 諸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원에 대해서는 신해순, 『朝鮮前期의 西班牙衙前 「皂隸·羅將·諸員」』, 『대동문화연구』 2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참조.

어렵게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선상대립을 법적으로 허용해주자는 건의가 제기된 것이고, 세조는 이에 따랐다. 이리하여 합법적으로 대립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세조대 선상 대립의 법적 허용은 당시까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다만 같은 세조대 허용된 공물의 대납까지 고려해 보면,⁵⁰⁾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조대에는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누구든, 어떤 물품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해서 대립이나 대납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립이나 대납에 대한 비용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국가의 공정가를 정해 두고 있었다. 대립, 대납의 법적 허용은 세조대의 전체적인 수취체제 및 인력 동원 체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조대에는 선상 입역 규정이 크게 변화한 것 외에도, 선상노의 대립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본인의 입역, 현물의 납입에 근거한 공물 및 역의 운영 방침과는 상반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세조 사후 계승되지 못하였고, 성종대 이후에는 다시 본인입역, 본색현물납의 체제로 회귀하게 되었다. 파격적으로 바뀐 세조대의 선상 노비 입역 규정은 성종대 이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점차 회귀하게 되었다.

4. 성종대 이후 선상규정의 재정비와 대립의 관행화

세조 사후 예종이 1년여 남짓의 짧은 재위 만에 사망하였고, 이후 성종이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성종은 즉위 직후부터 세조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였다. 보법의 시행과 맞물려 대폭 확장된 균역의 수를 조정하였고, 대납이 허용되었던 공물 역시 대납을 금지시키고 본색납 체제로 회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정비를 시행하였다. 성종이 즉위 당시 나이가 8세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러한 정책의 방향 선회는 대부분 세조대 구신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

50) 세조대 공물 대납에 대해서는 강제훈, 「朝鮮 世祖代의 貢物代納政策」 『조선시대사학보』 36, 조선시대사학회, 2006; 소순규, 「조선 세조대 공물 대납 公認의 정책적 맥락」, 『역사학연구』 72, 호남사학회, 2018b 참조.

다. 이러한 세조대 정책의 재검토는 노비의 선상 입역 규정에서도 이루어졌다.

노비의 선상 입역에 대해서는 우선 번차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세조대 전라, 경상, 강원, 충청, 황해도의 경우는 11번, 경기도는 13번으로 확대되었던 번차는 성종대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해 보자.

J-㉔. 신 등이 여러 관사의 奴婢를 참작하고 상고해서, 이미 大典에 의하여 5番으로 나누어 輪次立役하게 하였습니다. 변상하는 수는 정역노자가 4,200여 구, 봉족인 비까지 통계하면 모두 12,600여 구입니다.⁵¹⁾

J-㉕. 外方의 選上奴婢를 7번으로 나누어 3년 걸러 6개월을 입역하게 하면, 경중의 노비와 외방의 노비는 노고와 안일이 아주 달라 몇 해 안가서 경중의 노비는 날로 彫殘해 갈 것입니다.⁵²⁾

위의 J-㉔ 기사는 성종 3년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 중에서 선상 입역의 규정을 대전에 의거하여 5번으로 나누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과거 11번 내지 13번으로 이루어졌던 번차 규정이 5번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인데, 현재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서는 정확히 언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위의 기사에서 大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한창 교정 작업 중이던 『경국대전』을 지칭한다. 경국대전은 세조대 최초 완성된 이후 몇 차례 교정을 거쳐 성종 15년 최종본인 을사대전으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성종 3년의 기사인 J-㉔에서 언급하는 경국대전은 성종 즉위년부터 교정되어 성종 2년 반포된 ‘신묘대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상 노비의 입역 규정이 5번으로 변화한 시점은 신묘대전을 교정하던 시점, 즉 성종 즉위년 및 원년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51) 『성종실록』 권16 3년 3월 23일 己未. “臣等參詳諸司奴婢, 已依大典, 分五番, 輪次立役. 番上之數, 正役奴子四千二百餘口, 奉足奴婢通計一萬二千六百餘口.”

52) 『성종실록』 권26 4년 1월 12일 癸卯. “外方選上奴婢, 分七番, 越三年六月立役, 則京外奴婢 勞逸懸殊, 不數年京中奴婢, 日就彫殘.”

53) 기존 연구에서 전형택은 J-㉔ 기사에서 언급하는 大典을 세조 7년에 완성된 辛巳大典으로 보고, 번차가 5번으로 조정된 시점을 세조 7년으로 보았다. 전형택, 앞의 글, 1990, 19면. 그러나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으로 최종 반포되기 이전 몇 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성종 3년 시점에서는 성종 즉위년부터 교정된 辛卯大典이 통용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번차의 조정 역시 성종 즉위 이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국대전』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양혜원, 『『경국대전』

그런데 이러한 입역 규정은 성종 3년경 다시 한 차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J-㉔ 기사는 성종 4년 1월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 중 선상하는 노비의 번차는 7번으로 언급되고 있다. 앞서 J-㉓ 기사가 성종 3년 3월의 기사이므로, 성종 3년 4월-12월 경 다시 번차가 조정되어 7번으로 변화된 것이었다. 다만 당시까지 한 번의 입역 기간은 6개월로 세종대 정해진 기간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7번으로 정해진 번차는 이후 성종 15년에 완성된 『경국대전』 을사대전에도 반영되었다.⁵⁴⁾

위와 같이 성종대 초반 기존의 번차에서 5번, 7번으로 번차가 조정되면서 선상노비의 수도 함께 감소하였다. J-㉔ 기사에서 보듯이, 성종대 초반 1번에 선상 입역하는 노비의 수는 대략 4,200여 명이고 봉족까지 합산하면 대략 12,600여 명이었다. 이를 5번으로 계산하면 선상노비의 전체 수는 대략 63,000여 명에 달하였다. 과거 세조대 13만 명을 상회했던 수치에서 대략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었다.

한편 7번으로 번차가 증가하면서, 선상노비의 수도 이보다 다소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현존하는 『을사대전』을 참조해 보면, 차비노 및 근수노로 선상하는 노비의 수는 약 3,800여 명이었고, 이 중 경중에서 입역하는 450여 명을 제외하면 대략 3,300여 명 정도였다. 이 수치는 앞의 H-㉔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번에 노비 및 봉족까지 합계하면 대략 1만여 명이고 7번까지의 총 수를 계산하면 약 7만 명이 나온다. 요컨대 성종대 선상노비의 수는 대략 7만 명 정도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세조대 13만여 명에 비하여 절반 정도로 줄어든 수였다고 할 수 있다.

번차의 조정과 이를 통한 선상 노비의 수 감소 외에도 성종대부터 선상 입역의 대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성종 즉위 당시는 세조대 정책을 이어받아 선상의 대립을 허용하게 하였으나, 고액의 대립가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1달의 입역가를 면포 2필이 넘지

개정 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규장각』 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정연주, 「조선 전서로서의 『경국대전』의 성격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89, 한국사연구회, 2020 참조.
54) 『경국대전』 권5 형전 公賤.

못하도록 하였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 대립에 대립가가 면포 7-8필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사실 이러한 고액의 대립가가 형성된 것은 세조대의 선상 입역 규정 및 대립 허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11년의 선상노의 경우, 2명의 봉족을 지급받으며 5년 휴식에 6개월 입역 하도록 하였다. 즉 11년 중 1년을 입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 선상노 및 봉족은 국가에 노비신공을 바치는 것이 면제되었다. 세조대 규정으로 1년간 납공노의 신공액은 면포 1필에 미 2두, 납공비는 면포 1필에 미 1두였다.⁵⁶⁾ 이를 근거로 선상노 및 봉족이 11년간 면제받는 신공액은 총 면포 33필, 미 44두이고, 면포 1필의 가격은 대략 미 8두에 해당하므로 이를 면포로 환산하면 총 면포 38.5필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면제된 면포로 대립가를 지불한다고 하면, 1개월에 면포 3필을 지급해도 오히려 선상노의 경우에는 이익이었다. 그러나 대립가의 가격이 형성될 때는 이미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위에 형성되었을 것이므로 1개월에 면포 3필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입역이 무척 고역이었고, 이것의 면제가 입역대상자에게는 무척 편리한 일임을 감안하면 면포 3필보다 훨씬 상회하는 대립가 형성은 당연한 일이었다.

앞 장에서 세종대 직접 입역하는 대신 대립을 세울 경우 선상노 1명이 추가적으로 지는 연간 부담이 대략 면포 6필 정도라 계산한 바 있다. 만일 세조대 대립가 형성에도 이러한 추가적 부담 수준에서 가격이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1개월의 대립가는 대략 8.6필 정도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⁵⁷⁾ 따라서 1개월 당 면포 7-8필의 대립가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으며, 이것은 세조대 완화된 규정에 힘입어 대립의 시장가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종대 변차가 조정되면서, 선상노의 1개월 입역에 대한 국가 공정

55) 『성종실록』 권7 1년 8월 29일 甲戌.

56) 『성종실록』 권44 5년 윤6월 25일 戊申.

57) 11년간 면제 혹은 봉족비로부터 수취한 면포 38.5필에다가, 연간 6필 × 11년 = 66필을 더하면 대략 104필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8.6필이 나오는데, 이는 사료에서 언급된 7-8필과 거의 유사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가치는 세조대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조정에서 언급한 1달 대립가 면포 2필은 납공노비의 부담액을 고려할 때 거의 등가인 가치였다.⁵⁸⁾ 그러나 직접 입역에 비하여 대립이 여러모로 선상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립에 대한 시장가는 이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거기에 더해 바로 몇 해 전까지 1개월 대립가가 면포 7-8필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국가에서 주장하는 1개월당 면포 2필의 대립가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대립가를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대립을 막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국가에서는 선상 입역의 대립을 법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K. 選上을 대신 세우는 것은 祖宗朝부터 그 禁法이 엄격히 서있고, 그것을 오랫동안 시행하였으나 관이나 백성에게 아무 폐단이 없었다. 지금에는 그 금법이 없어지고 관에서 代立價를 거두어 지급하니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마땅히 옛 제도를 다시 회복하되 그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대신 세우는 자는 본인이나 京主人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고 대신 세우게 하며, 役을 서게 된 다음에 그 증빙 문서를 주고 그것으로 代立價를 받게 하면 관과 백성이 모두 편할 것이다.⁵⁹⁾

다만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경우 대립은 금지되었으나 선상하는 노비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립을 허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도 대립 여부를 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립가의 지급 역시 관을 통해 하도록 하며, 대립가도 국가에서 허락한 한 달 면포 두 필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선상 노비 입역은 세조대 이전과 같이 원칙적으

58)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성종대 7번 입역의 경우 7년 중 1년을 입역하게 되고 이 기간 면제 혹은 봉족비로부터 수취한 면포의 총량은 약 21필, 米 28두이다. 면포 1필이 대략 米 8두로 상정하여 면포로 환산하면 총 24.5필이다. 이를 대립가로 지급한다면 국가에서 주장하는 1개월 2필과 거의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장에서의 대립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59) 『성종실록』 권61 6년 11월 28일 癸酉. “選上代立者, 自祖宗朝, 嚴立禁章, 行之已久, 官民無弊. 今罷禁防, 至以官收其價給之, 其弊不可勝言. 宜復古制, 其中不得已有故代立者, 或當身, 或京主人, 告于主曹, 方許代立, 準役後給牒收價, 使官民兩便.”

로 대립을 금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대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미 선상 입역의 대립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양반 관료들도 이러한 대립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립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았다. 특히 각 관서에 배속된 근수노의 경우, 양반들이 근수노의 대립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노를 근수로 부리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리고 이러한 관례는 성종대 후반경에 가면 이미 폐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L. “外方 選上奴가 농사철에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 경우 그 官司에 댓가가 되는 물건을 갖추어 보내고서 한가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役을 대신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일이 자신이 직접 와서 役事하게 한다면 逃避하는 罪 없이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였다. “농사철에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 자가 과연 많이 있으니, 이 일은 금할 수 없다.”⁶⁰⁾

위의 L 기사는 성종 21년의 기사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대립을 금하도록 한 K 기사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미 당시 선상노의 대립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언급되고 있었고, 오히려 친히 역을 설 경우 농사를 폐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립의 필요성까지 수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정 관료들이 자신의 근수노에게 대립가를 받고 역을 면제해 주는 일은 이제 광범위한 관행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성종대 이후에는 선상 대립이 일반화 되어 갔으며, 고위 관료에게 지급되는 근수노의 경우는 해당 관원에게 일정한 역가를 바치고 역을 면제받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중종대에는 선상 대립가가 1개월에 10필까지 치솟게 되었고,⁶¹⁾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이리하여 국가에서

60) 『성종실록』 권239 21년 4월 10일 壬辰. “外方選上奴, 如農時不欲上來, 則備送價物于其司, 使閑遊人代役者有矣. 若令一身親來役, 則不無逃避之弊.” 上曰, “農時不欲上來者, 果多有之, 此事不可禁也.”

61) 『중종실록』 권7 3년 11월 20일 甲寅.

는 대립가를 1개월에 대립가를 1개월에 면포 2필 반(상목면포일 경우 5필)로 규정하였고, 대립가를 관에서 거두어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⁶²⁾ 그러나 실제 수취 일선에서는 면포 2필 반이 아닌 3필을 상목면포 5필과 등가로 수납하였고, 이러한 관행은 대립가를 납부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³⁾ 이리하여 중종 36년에는 종래의 면포 2필 반에서 반필을 더한 3필로 1개월의 대립가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중종대의 경우 1개월 입역 대립가는 면포 2필 반으로 규정되었고, 실제 수납에서는 3필을 수납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종대에 이르면 선상대립은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종대에는 1번의 입역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해 보자.

M.各司의 奴子是 외방에 흩어져 있다가 해마다 번갈아 서울에 올라와서 번을 서는데 이를 선상이라 한다. 매양 번은 석 달을 기준하는데, 석 달의 대립가는 五升綿布 7필 반이다.⁶⁴⁾

위의 M 기사에 의하면, 중종 31년 무렵 1번의 입역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감축되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조선왕조실록』 상에서는 이러한 입역 기간 변화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추적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적어도 중종 31년 이전 어느 시점에 1번의 입역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운영되었다는 점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중종대 1번의 입역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 조치는 이후 명종, 선조대 초반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조정의 고위관리를 역임한 유희춘의 『미암일기』에는, 당시 근수노로 복역하는 대신 유희춘에게 선상 대립가를 납부하는 기사가 여럿 등장한다. 이 중 기존연구를 통해 이미 소개된, 선

62) 『중종실록』 권20 9년 9월 15일 甲戌.

63) 『중종실록』 권31 12년 윤12월 7일 戊寅.

64) 『중종실록』 권81 31년 1월 11일 丁卯 1번째기사. “有各司奴子, 散在外方, 而年年相遞上京立役者, 謂之選上. 每一番準三朔, 三朔之價, 五升綿布七匹半.”

조대 초반 선상 가포 수납 내역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유희춘의 선상대립가포 영수 기록(1569-1574)⁶⁵⁾

연월일	왕력	관직	명목	액수	비고
기사 7월 12일	선조2(1569)	성균관 대사성	선상	26필	4選上, 閏朔
7월 29일	"	승문원 부제조	추 선상	6필 반	閏朔
경오 5월 9일	선조3(1570)	홍문관 부제학	하등 선상	24필	4명
8월 1일	"	"	선상	24필	
임신 11월 2일	선조5(1572)	봉상시 제조	추등 선상	13필	閏朔
계유 3월 12일	선조6(1573)	"	춘등 선상	12필	
4월 17일	"	교서관 제조	선상	12필	
6월 18일	"	예조참판	하등 선상		3名價
6월 21일	"	교서관 제조	하등 선상		2명
8월 5일	"	봉상시 제조	선상		
11월 19일	"	"	선상	12필	
11월 27일	"	예조참판	선상	8필	
갑술 8월 27일	선조7(1574)		추등 선상	13필	선상대표, 閏朔

우선 위의 〈표 2〉에서 유희춘은 거의 해마다 선상 대립가를 직접 수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종대부터 확립된 관수관급의 원칙은 선조대 초반 이미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상 대립가의 명목이 ‘춘등’ ‘하등’ ‘추등’ 대립 등으로 나와 있어, 각 계절마다 한 차례씩 입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3개월 입역은 선조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다만 선조대의 대립가는 기존 중종대에 비하여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역시 『미암일기』 상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2〉에서와 같이 경오년 5월 9일, 그러니까 선조 3년(1570) 유희춘은 4명분의 하등 선상의 대립가를 받았는데, 면포 24필이었다. 또 그보다 앞선 기사년인 선조 2년(1569) 7월 12일에는 4명의 선상에 대한 대립가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면포 26필을 받았다. 주목되는 것은 기사년 선상 대립을 받을 때에는 선상 기간 중 윤달이

65) 이 표는 지승중, 앞의 책, 263면 〈표2-5〉를 전재하였다. 단, 본래 표에는 원저자가 추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추정치는 제외하였다. 또한 편의를 위해 왕력과 서기연도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閏朔 여부를 확인하여 표에 포함시켰다.

끼어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선상노 1명의 한 차례 선상대립가는 면포 6필이며, 윤달이 끼어 있는 경우는 반 필을 추가로 납입했다고 볼 수 있다.

선조 5년과 선조 7년에도 선상가로 13필을 받고 있는데, 본문에는 몇 명의 대립가 인지 명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위의 내용으로 추정컨대 2명의 납입가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5년 임신년은 윤2월, 선조 7년 갑술년은 윤12월이 끼어 있었고 따라서 한 해가 13달로 되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한 해가 13달이 되는 해, 즉 윤달이 끼어 있는 해는 1달=2필의 면포를 해당 연도에 입역하는 사람들이 4로 나누어 반 필씩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⁶⁾ 따라서 선조대 초반 대립가는 1개월에 2필이었고, 윤달이 들어있는 경우는 4명의 입역자들이 서로 반 필씩을 더 부담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명종대 이후 선조대 초반까지 1번 입역 기간 3개월은 중종대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대립가는 『경국대전』의 규정과 같이 1개월에 면포 2필로 하향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윤달이 끼어있는 경우는 그 해 입역자 네 명이 2필을 추가 부담하여 각각 반필의 대립가를 추가로 납입하였다. 또, 성종대부터 대립가를 관수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실제 관수관급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위의 윤희춘의 사례처럼 관료 개인에게 대립가를 바치는 관행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을 통해 조선전기 선상 노비의 입역 규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선상 입역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가 시작된 시점은 정종대부터였으며, 세종대 이르러 선상 규정의 정비가 일단락되었다. 선상은 奴에게 부과하였고 이들에

66) 윤달이 낀 경우, 해당 달이 들어있는 입역자가 대립가를 모두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그 해 입역자가 반 필씩 부담하였다고 본 이유는, 본문에서 설명한 임신년과 갑술년 선상대립가 13필의 명목이 모두 '추등' 선상이기 때문이다. 임신년의 경우 윤2월이었고, 갑술년은 윤12월이었기 때문에 윤달이 들어있는 당시의 입역자가 윤달에 대한 몫까지 부담한다고 한다면, 임신년의 경우는 '춘등' 선상자가, 갑술년의 경우는 '동등' 선상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했다. 그러나 두 해 모두 윤달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모두 반 필씩을 더 부담하는 걸로 보아 윤달의 가포 2필은 네 명의 입역자가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라 추정 가능하다.

게는 봉족婢 2명이 지급되었다. 선상하는 자들은 모두 3번으로 나뉘어 입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서울의 각 관서들이 개별적으로 노비의 선상을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노비의 수에 따라 번차의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같은 선상노라 하더라도 소속 관서에 따라 입역 부담의 편차가 매우 컸다.

이러한 선상 입역 규정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단종대부터였다. 단종 2년의 선상 규정 변화는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번차를 기존 3번에서 11번 내지는 13번(경기)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상노비들은 5년 내지는 6년에 한 번, 6개월씩 입역하게 되었다. 이 번차 조정에 따라 전체 선상노비의 수 역시 대폭 증가하였는데, 세종대 대략 3만 6천 전후로 추정되는 선상노 및 봉족의 수는 13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적으로 금지되던 선상 대립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존 각 관서별로 관리하던 선상 노비는 지방의 각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관리 체계에 따라 연산군대 이후에는 선상하는 노비의 수가 각 고을이 공안에 기재되어 운영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성종 즉위 이후, 세조대 선상 입역은 다시 한 차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선 11번 내지는 13번이었던 번차를 5번으로, 이후 다시 7번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상노비의 수도 대략 7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선상 노비의 대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는데, 완전한 금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립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 선상 대립가를 공정하였는데, 1개월의 입역가는 면포 2필로 정해졌고 이것이 『경국대전』에도 수록되게 되었다.

그러나 선상 노비의 대립은 점차 사회 관행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아 갔으며, 성종대 후반부터는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중종대 이후 선상 대립은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고, 대립가는 성종대보다 다소 높은 2필 반 정도로 규정되었다. 또, 중종대에는 1번의 입역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이후 선조대 이르기까지 입역가는 1달에 면포 2필 수준으로 다소 하향 조정되어 성종대 『경국대전』 규정과 비슷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재훈, 「朝鮮 世祖代의 貢物代納政策」, 『조선시대사학보』 36, 조선시대사학회, 2006, 109-144면.
- 김석형, 「이조초기 국역편성의 기저」, 『진단학보』 14, 진단학회, 1941, 1-50면.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소순규, 『조선초기 공납제 운영과 공간개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_____, 「세조대 공안 수록 내용의 확대와 재정적 위상 강화」, 『역사와 현실』 110, 한국역사연구회, 2018a, 177-217면.
- _____, 「조선 세조대 공물 대납 公認의 정책적 맥락」, 『역사학연구』 72, 호남사학회, 2018b, 33-66면.
- _____, 「조선 태종대 저화 발행 배경에 대한 재검토—‘화폐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역사와 담론』 92, 호서사학회, 2019, 111-159면.
- 신해순, 「朝鮮前期의 西班牙衙前 「皂隸·羅將·諸員」」, 『대동문화연구』 2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7, 183-232면.
- 양혜원, 「『경국대전』 개정 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규장각』 5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331-360면.
-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奴婢制의 추이와 성격」, 『노비·농노·노예—隸屬民의 比較史—」, 일조각, 1998.
- _____, 「한국사 연구에서 노비제가 던지는 몇 가지 문제」, 『한국사시민강좌』 40, 일조각, 2007, 144-159면.
- 전형택, 「朝鮮初期의 公奴婢 勞動力 動員體制」,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1990, 15-39면.
- _____, 「奴婢制度 및 그 變遷에 관한 諸說의 整理: 朝鮮時代の 奴婢 研究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68, 국사편찬위원회, 1996, 121-143면.
- 정연주, 「조선 전서로서의 『경국대전』의 성격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89, 한국사연구회, 2020, 33-77면.
-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Abstract】

A study on Service (入役) Regulations of Official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選上) in the Early Joseon Dynasty

So, Soon-Kyu*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service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there are not relatively many studies on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each central capital bureau and their service. Aspects of operation of the official slave system and the arrangement process of the obligation and service regulations of tribute-paying slaves,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and service slaves in the Joseon dynasty were clarified through the existing studies. However, the obligation and service regulations of these slaves leave place for reconsidering several things. This thesis traced the arrangement process of the service regulations of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ir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process and drew the conclusions that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existing studie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that were arranged in earnest since the reign of Taejong of Joseon,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were imposed on the slaves (奴) who reside in local areas and two female slaves, the sustainers, were provided for them. The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serviced three times taking turns and generally, the service period was 6 months. However, these slaves' turn was variou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that each capital bureau had them. Accordingly, their obligations were various. The number of service of the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was changed to 11 times for the local areas and 13 times for Gyeonggi in the reign of Danjong of Joseon as it was drastically increased. Accordingly, the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serviced for 6 months per 5 or 6 years. This number was again reduced and changed to 7 times in the reign of Seongjong of Joseon and the relevant contents were recorded in *National Code (Gyeongguk daejeon)*. A service period shortened from 6 months to

* Course of Taehaks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3 in the reign of Jungjong of Joseon.

Meanwhile, there continued to be payment for military service substitution about service of the slaves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The royal court that had put a ban on payment for military service substitution at first legally allowed it since the reign of Seongjong of Joseon and made the state decide payment for corvee service on the basis of public opinions. The then official price of the state was 32 meters of cotton cloth as the service price of one month. The service price that was actually used in non-official circles was the level that exceeded this. However, seeing that the service price of one month is 32 meters of cotton cloth in the materials that show the situations of the late 16th century, it can be thought that the service price of the national official price was social custom.

Keywords: Slave, Official slave, Slave selected and sent up to the capital (選上), Service (入役), Payment for service substitution (代立), Payment for corvee service (代立價).

접수일: 2020.09.30. || 심사일: 2021.01.11. || 게재확정일: 2021.02.10.